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 제2022-66호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업소 등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라 1 동 장

1. **제 목**: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3. **공고기간** : 2022. 12. 15. ~ 2022. 12. 29.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씨유 청라중흥점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032-718-3584)
6.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가 직권취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